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20
----------	-------

발의연월일 : 2026. 8. 18.

발 의 자 : 이훈기 · 민병덕 · 문금주
곽상언 · 송재봉 · 박민규
이강일 · 이해민 · 양부남
김현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하기 위한 정부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뉴미디어가 증가하는 등 다매체 환경 속에서 광고 기획 · 전략 · 제작 · 매체집행 등에 있어서 매체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광고전문성 부족, 매체집행 및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방송발전기금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약 2% 남짓으로, 각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등 지역방송발전의 필요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시 공공성과 홍보매체의 지역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하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또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덧붙여 수탁기관의 수수료 집행결과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은 전년도 수수료 지원의 집행결과 및 활용 현황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공공성 및 홍보매체의 지역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이나 단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를 “지원순위 및 사용계획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 가목과 나목의 홍보매체 또는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전년도 수수료 지원의 집행 결과 및 활용 현황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에 대한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에 따라 요청하는 정부광고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홍보매체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u>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u>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매체 선정) ① ----- ----- ----- ----- -. ----- <u>국민</u> <u>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공공성</u> <u>및 홍보매체의 지역성</u>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단서 신설></u>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 가목과 나목의 <u>홍보매체 또는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매체</u>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2. (생략)

<신설>

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원순위 및 사용계획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전년도 수수료 지원의 집행 결과 및 활용 현황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3. (생략) ⑤ (생략)	<u>를」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 기금 또는 「방송광고판매대 행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2에 따른 지역중소지상파방 송발전기금에 대한 지원</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